

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12. 22.

발 의 자 : 성원환·김명국·이달호·

김선욱·배효임·배철헌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전부개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항의 변경(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 직무관련 신설(안 제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
3.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 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u></p>	<p><u>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90조 및 제91조</u>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u>제102조 및 제103조</u>----- ----- ----- ----- ----- ----- -----.</p> <p><u>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u></p> <p><u>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u> <u>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u> <u>3.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u>

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
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
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
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
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
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
독 권한을 가진다.

제5조 · 제6조 (생략)

제6조 · 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
조와 같음)